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라 도 균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 제출일자 : 2006년 7월 18일
- ☐ 제 출 자 : 안재홍 의원 외 3인

2. 위원회 회부

- ☐ 회부일자 : 2006년 7월 19일
- ☐ 상정일자 : 2006년 7월 21일

<제1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3. 개정이유

- ☐ 지난 5.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에게 정당별 공천제가 실시됨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 소속 정당을 가지고 있어, 국회와 광역자치단체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당별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당간의 효율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조정을 통하여 원만한 의회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 ☐ 의회에 3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 할 수 있다.
(안 제2조제1항)
- ☐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안 제2조제2항)
-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2조 제3항)
- ☐ 의장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안 제3조)
-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둔다(안제17조)

4. 검토의견

- ☐ 교섭단체제도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내부에서 구성되는 의정협의체로서 자치법규에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행자부(자치분권제도팀-28, 2006. 7.12)의 판단이므로, 우리구의회에서도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됨

-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의원의 정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다수라 함은 3인 이상을 뜻하고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원 정수가 11인인 우리구의회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경우 각 정당의 의견을 집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예상되는 반면, 각의원의 개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원총회가 사실상 폐지되고 또한 각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각 사안이 이미 결정되어 버린다면 의회운영 전반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본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 교섭단체운영에 따른 교섭단체별 시설과 직원배치가 요청됨.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의회는 경우 3명(5급2, 6급이하1) 이내로 둘 수 있으므로, 현재 의사팀장이 겸직으로 있는 운영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확보가 요구됨.

5. 관련법령 및 지침

-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관련 질의회신 내용통보(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28, 2006.07.12) : 별첨1 관련공문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2항관련 별표5의2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5급	6급이하
7명	2명 이내	1명	1명
9명이하	2명 이내	2명	
15명이하	3명 이내	2명	1명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음.